

가압류결정경정허가신청

사 건 2000즈단000호 채권가압류

채 권 자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♦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1. ■ ■ 운송사업조합연합회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자 회장 ■■■

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주식회사 ●●은행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●●●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 청 취 지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

신 청 이 유

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표시 중 제3채무자 주 식회사 ◉●은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 로 이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라기에 이 신청을 합니다.

소명방법 및 첨부서류

1. 채권가압류결정문 1통

1. 별지목록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가압류할 채권의 표시

1. 제3채무자 ■■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,

청구채권 금 10,000,000원

채무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)가 제3채무자 ■■ 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령하는 복지금, 수익금 등 배당금 가운데 2분의 1씩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.

2. 제3채무자 주식회사 ●●은행에 대하여,

청구채권 금 10,000,000원

채무자(주민등록번호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)가 제3채무자(취급점 : ● ●지점)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[다만,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]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.

- 다음 -

- 1. 압류·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·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 에 따라서 가압류한다.
 - 가. 선행 압류 ·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
 - 나. 선행 압류·가압류가 된 예금
- 2.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.
 - 1) 보통예금 2) 당좌예금 3) 정기예금 4) 정기적금 5) 별단예금
 - 6) 저축예금 7) MMF 8) MMDA 9) 적립식펀드예금 10)신탁예금 11)채권형예금 12)청약예금
- 3.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 류하다. 끝.



※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

제449조 (특별항고)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,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·규칙·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(特別抗告)를 할 수 있다.

-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